

##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단,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원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원 (단, 본인서명사실증명원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제출 시 필요(인감증명서와 대조 우측 날인)
추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 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발급)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주택 약약서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당사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불가합니다.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 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필수 기재(포함)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다른 세대원의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필수 기재(포함)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